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11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5도10460 가. 직무유기
나. 공용물건손상(예비적 죄명 공용물건은닉)
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라. 허위공문서작성
마.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라.마. B
3.가.나.다.라.마. C
4.가.라.마. D
5.가.라.마. E
6.가.라.마. F
7.가.라.마. G
8.가.다.라.마. H
9.가.라.마. I
10.가.라.마. J
11.가.라.마. K
12.가.라.마. L



13.가.라.마. M

상 고 인 피고인 B, C, E, F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Q, R, VR(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S(피고인 C, D, G, H, I, J, K, L, M을 위하여)
 법무법인 VI(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VJ, VK, VL, T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5노13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 E,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2014. 3. 15.부터 2014. 4. 16. 08:15까지 관제 직무유기의 점과 2014. 4. 16. 08:15부터 09:00경까지 관제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그 각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AA

